

4. 공고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5. 납부기한: 2020.11.30.
6.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
 - 가.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·지점(한국은행 제외),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·지점,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, 인터넷(etax.seoul.go.kr)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도 납부가 가능하며,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.
 - 나.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『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』에 따라 최고 75%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, 관허사업 제한, 신용정보 제공,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7.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
 - 가. 이의제기 기한: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
 - 나.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,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.
 - 다.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.
 - 라. 과태료 부과 처분청(이의제기서 제출처)
 - 주 소: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-3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
 - 전화번호: 02-2040-0322, 팩스번호: 02-2040-0305

2020 - 2929

()
가()

1. 도시관리계획(광운대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) 결정(안) 및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에 대하여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출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10월 22일
서울특별시 장

1. 계획의 개요

- 계획명 : 도시관리계획(광운대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) 결정(안)
- 위치 :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85-7번지 일원
- 면적 : 148,166.1㎡
- 계획수립권자 : 서울특별시

2. 공람기간 및 장소

- 공람기간 : 2020년 10월 23일(금) ~ 2020년 11월 20일(금)
(공고 익일부터 21일간,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)
-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(☎ 02-2133-8353)
노원구 미래도시과(☎ 02-2166-0658),
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<http://www.eiass.go.kr>)
- 관계도서 : 게재 생략(공람장소에 비치)

3. 주민설명회

- 개최일시 : 2020년 11월 5일 목요일 16:00
- 장 소 : 한내행복발전소(노원구 월계동 333-1)
※ 주민설명회 참여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, 최근 14일 이내 여행력이 있거나, 발열 또는 기침,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행사 참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,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인원초과(50인미만)시 추가참석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의견제출

- 의견제출 기간 : 공람기간 내 및 공람기간 끝난 후 7일 이내('20.11.27일 까지)
- 제출방법 :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서면제출
- 제출장소 : 공람장소, 우편·전자우편(wangmull@seoul.go.kr), 팩스(02-2133-0737)
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<http://www.eiass.go.kr>)

5. 기 타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(☎ 02-2133-836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0-2931

「도로법」 제77조(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)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7조(과태료의 부과) 제1항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2조(독촉과 최고) 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 22일
서울특별시장